


기안용지

(번호: 713 - 6156)

분류기종 문서번호	문부 02124 - 20	시행일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 10.5.3.1.		
수신처 보존기간	경부		
시행일	90		
보통기종 보존기간 의할사항 비밀부담영역	사기 		
기안배달지	김재재장	문답대 690 호 29.1.7	시봉비 검열 1990.1.09 공제관
간송 수신 일지	가말함	발신일자	1990.1.09 김재재장 발행
비주	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규정 중개정규정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같은전

1. 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규정 중개정규정

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 39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시

보에 게재 반영하고자 합니다.

첨부: 발령안 1부.

(제2안)

수신: 홍보관

제 목 : 시 보 제 재

1. 별첨 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행할 것.

첨 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690 호 1부. 끝.

(제 3인)

수 신 : 감사담당관

제 목 : 훈령 발행

1. 감일02101-235 (89 . 12 . 27) 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중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행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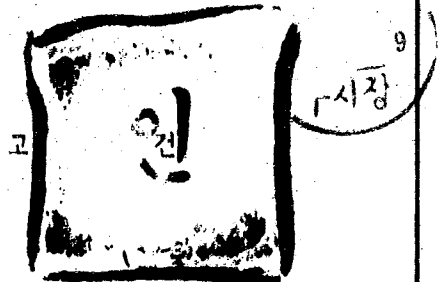
첨 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690 호 1부. 끝.

서울특별시 감사사문위원회 운영 규정중개정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년 1월 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중개정 규정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제4호중 "이위원회"를 "단체"로 하고 동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촉직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장을 따로 둘 수 있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직부의 일부를 대리케 할 수 있다.

제5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중 "정기회의는 년2회"를 "정기회의는 년6회"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를 "간사는 감사1담당관이 되고"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위원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인사과장, 시정개발담당관으로 하며"를 "위원은 감사1담당관, 감사2담당관, 조사담당관, 인사과장, 시정개발담당관으로 하며"로 하고, "필요시 업무관련 관계과장"을 "필요시 업무관련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